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22호

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

서울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.) 및 서울시고시 제2008-215호(2008.06.26.)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된 영등포구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에 따라 해제하고,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4일
서울특별시장

1. 해제사유

본 구역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(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)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구역으로서, 같은 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(원안 가결) 됨

2.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
가.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

위 치	면 적(ha)	정비예정구역 지정일
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 일대	1.57	서고시 제2004-204호(2004.06.25.)

나. 정비예정구역 계획내용

구분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 (%)	층수	건폐율 (%)	추진 단계	사업 시행방식	정비 유형	비고
기정	9	당산1동	110	1.57	210	-	50	3	주택재개발 정비사업	철거	
폐지	해 제										

다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구역지정
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	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	15,764	서고시2008-215호 (2008.6.26.)

라. 정비계획

- 용도지역 : 변경없음
-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	15,764	100.00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,620	10.28	
	도 로	790	5.01	
	공 원	830	5.27	
택 지	소 계	14,144	89.72	
	택 지1	13,834	87.76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택 지2	310	1.96	종교시설

-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■ 도 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점	종점	
기정	소로	1	-	1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82	당산동2가 159-4	당산동2가 48-19	
변경	소로	2	-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82	당산동2가 159-4	당산동2가 48-19	도로폭 환원 10m → 8m
기정	중로	3	-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0	당산동2가 48-19	당산동2가 56	
변경	소로	2	-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0	당산동2가 48-19	당산동2가 56	도로폭 환원 12m → 8m
폐지	소로	3	6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147-1	당산동2가 159-2	
변경	소로	3	6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147-1	당산동2가 159-2	환원
폐지	소로	3	4	3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110	당산동2가 122	
변경	소로	3	4	3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110	당산동2가 122	환원
폐지	소로	3	2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53	당산동2가 71	
변경	소로	3	2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5	당산동2가 53	당산동2가 71	환원

■ 공 원

결정 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명 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공원	소공원	당산동2가 159-4번지 일대	830	-	-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

■ 건축시설계획

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
명칭	면적(㎡)					
택지1	13,834	당산동2가 110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2% 이하	238% 이하	22층 이하 (66m이하)
택지2	310	당산동2가 159-3 일대	종교시설	관련법규에 의함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3. 위치도 및 해제도면 : 붙임과 같음

4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- 실효일 : 고시 게재일

5. 관련서류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(02-2133-7237) 및 영등포구 주택과(02-2670-3660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도면

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도면

□ 위 치 도



□ 정비예정구역도(기정)



□ 정비구역 결정도(해제)

